

운중초등학교 학교규칙



2009. 03. 01. 시행
2009. 04. 09. 승인
2011. 05. 23. 개정
2011. 11. 01. 개정
2012. 11. 16. 개정
2013. 09. 01. 개정
2015. 09. 24. 개정
2016. 03. 01. 개정
2018. 04. 11. 개정
2020. 09. 14. 개정
2022. 06. 28. 개정
2022. 12. 28. 개정
2023. 04. 14. 개정
2024. 04. 15. 개정

운 중 초 등 학 교

학 칙 목 차

- 제 1장 총칙
- 제 2장 명칭 및 위치
- 제 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 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 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 제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 제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 8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 제 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 부칙

※ 별도규정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운중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운중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바름 · 열정 · 새로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운중어린이’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운중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45번길 8번지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사계절방학 등)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교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45조의 규정에 의거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③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처리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제16조(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재취학)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21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①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의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③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 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④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제29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0조(학생생활규정) ①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 10 장 학업중단 예방

제34조(학업중단예방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예방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11 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중초등학교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중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0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1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별도규정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다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 ②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다만, 가정학습 허용 시 신청서는 당일 제출까지 허가할 수 있다.
-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④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학습 형태)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견학활동
- ④ 체험활동
- ⑤ 가정학습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5조(결과 처리)

-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제6조

- ① 이외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당해 교육청 지침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운중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운중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